

재무감사

감사 결과 보고

2016년 상반기 회계 및 재무감사

2016. 9.

UX 감 사 실
한국국토정보공사

- 1 -

||| 목 차 |||

I.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배경 및 목적	1
2. 감사대상 및 범위	1
3. 감사기간 및 인원	1
4. 감사중점사항	1
II. 감사대상 업무 현황	2
1. 상반기 사업실적	2
2. 상반기 사업실적 비교	2
III. 감사결과	3
1. 총 평	3
2. 지적사항 총괄	3
3. 지적사항 요약	3
IV.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4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4
1-1.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4
2. 현지조치 사항 일람표	4
V. 기타사항	5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이번 감사는 2016년 상반기 결산서, 재무제표, 기타 부속서류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등의 재무정보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작성하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우리공사 재무정보의 대외공신력을 확보하고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실시하였다.

2.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본사 및 0000000, 00000000, 12개 본부 등을 대상으로 2016년 6월 30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상반기 결산서, 재무제표, 기타 부속서류 등 각 기관 회계업무 처리사항 전반을 대상으로 감사하였다.

3. 감사기간 및 인원

2016년 8월 1일 부터 같은 해 8월 2일까지 2일간 감사실 2인, O회계법인 공인회계사 0000 외 3인(4인)의 감사인력을 투입하여 실지 감사를 실시 하였다.

4. 감사중점사항

이번 감사는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의 적정성 유무, 사업 및 운영성과 분석, 고위험 리스크 점검, 측량수수료 수입현황 및 미수수료로 관리 실태 확인, 미수금 대손충당금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 점검 등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1 -

II. 감사대상 업무 현황

1. 상반기 사업실적

(단위 : 백만원)

I.	사업수입	(+)	241,365
II.	사업비용	(-)	209,363
III.	사업손익(I-II)		32,002
IV.	기타수익	(+)	2,028
V.	기타비용	(-)	5,840
VI.	기타손익	(+)	1,289
VII.	금융수익	(+)	1,447
VIII.	금융원가	(-)	10
IX.	법인세차감전성과 (III+IV-V+VI+VII-VIII)	(+)	30,916
X.	법인세비용	(-)	7,481
XI.	당기순이익(IX-X)		23,435

2. 상반기 사업실적 비교

[2016년도 상반기 사업실적표]

(한국국토정보공사)

(단위 : 백만원)

과목	당기		전기		증감 금액	비고
	금액	금액	금액	금액		
I 사업수입		241,365		215,228	26,137	
1. 측량수수료수입	241,365		215,228			
II 사업비용		209,363		199,726	-9,637	
1. 업무비	181,395		172,986			
2. 관리비	27,968		26,740			
III 사업손익		32,002		15,502	16,500	
IV 기타수익		2,028		1,160	868	
V 기타비용		5,840		5,653	-187	
1. 기술원 양성비	2,561		2,298			
2. 연구사업비	3,061		3,067			
3. 기부금	28		40			
4. 잡손실	27		35			
5. 투자부동산상각비	163		142			
6. 기타의대손상각비			71			
VI 기타손익		1,289		811	478	
VII 금융수익		1,447		979	468	
VIII 금융원가		10		0	-10	
IX 법인세차감전성과		30,916		12,799	18,117	
X 법인세비용		7,481		3,097	-4,384	
XI 당기순이익		23,435		9,702	13,733	

- 2 -

Ⅲ. 감사결과

1. 총 평

2016년 6월 30일 기준의 상반기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상반기 손익계산서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및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공사의 재무규정·회계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으며

다만, 감사의견에는 영향이 없지만, 외부감사인이 상반기 감사 수행 결과 참고하여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의견 개진함에 따라 본 결산 외부회계 감사 대비 및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처분요구하고자 합니다.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천원, 명]

구분	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합치분	제도개선	모범사례
		통보	시정	개선	권고	회수	지급	징계	문책	고발			
건수(인원)	2			1		1							
금액	136,110					136,110							

3. 지적사항 요약

-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과제의 부가가치세 적용에 관한 사항 {통보}
 수탁과제 연구결과물의 소유권은 각 주관연구기관등과 체결한 협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고, 연구결과물이 주관연구기관에 귀속되도록 협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수탁과제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 3 -

- ② 전신전화가입권 반환청구에 관한 사항 {시정}
 유선전화 가입 시 납부한 전신전화가입권의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통신비 절감등을 위하 인터넷전화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Ⅳ.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명, 원)

일련번호	감사대상기관 (관제기관/부서)	건명	처분요구			조치기한	감사자
			행정상 조치종류	재정상 조치금액	신분상 조치인원		
3-1	OO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과제의 부가가치세 적용에 관한 사항	통보			1개월	감사실 회계법인
3-2	OO□□실	전신전화가입권 반환청구에 대한 사항		136,109,512		1개월	"

행정상 조치 : 1건 <통보> 재정상 조치 : 1건 <시정(회수)>

1-1.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제 목	처분내역				
	조치양정	소속	직급	성명	관련지적사항
① "해당사항 없음"					

2. 현지조치 사항 일람표

(단위 : 천 원, 명)

일련번호	제 목	감사대상기관 (관제기관/부서)	조치 사항	금액	인원	감사자
1	"해당사항 없음"					

- 4 -

V. 기타사항

1. 향후 처리계획

- 관련부서에 처분요구(통보)

2. 불 임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부.

- 5 -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통 보

제 목 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과제의 부가가치세 적용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본사 000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는(이하 “공사”라 한다.) 00000000진흥원 등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수탁과제”라 한다.)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1. 수탁과제 연구결과물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2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주관연구기관”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9조(협약의 체결) 제1항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에 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협약을 중앙행정기관과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2조(정의) 제5호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는 기관을 “위탁연구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제2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등의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소유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가 수탁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연구결과물의 소유권은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주관연구기관과 체결한 협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다.

- 6 -

2. 수탁과제 수행의 부가가치세 적용에 대한 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3호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표] 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과제의 부가세 적용 범위

구분	협약 당사자	대가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과세 여부
정부지원과제	중앙행정기관 - 주관연구기관	연구결과물의 소유권이 주관연구기관 귀속	대가성 없음 기존과 동일 면세
정부지원 위탁과제	주관연구기관 - 위탁연구기관	연구결과물의 소유권이 주관연구기관에 귀속	대가성 있음 부가세법 규칙 제32조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개발 (신이론 방법 등에 관한 연구)에 한하여 면세

또한, 기획재정부 연구비경산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과제 부가세 처리(안)’ (2014. 4. 30.)을 통해 위 [표]와 같이 위탁연구기관이 수행한 연구결과물의 소유권이 주관연구기관에 귀속되는 경우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가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한 수탁과제의 지식재산권등 연구결과물이 주관연구기관에 귀속되도록 협약이 체결되었다면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공사가 수행중인 수탁과제 협약서의 ‘연구결과물 소유권 귀속’ 조항을 검토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수탁과제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조치할 사항 OOO장은 현재 수행중인 연구과제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수탁과제가 있는지 검토하고 향후 수탁과제 수행 시 연구과제 협약서의

‘연구결과물 소유권 귀속’ 조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적용여부를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시정요구(회수)

제 목 전신전화가입권 반환청구에 대한 사항

관 계 기 관 본사 OO□□실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유선전화를 가입하며 OOOO(이하 “□□”라 한다.)에 납부한 전신전화가입권 136,109,512원을 비유동 비금융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

[표] 각 기관별 전신전화가입권 현황

(단위: 원)

기관명	전신전화가입권 잔액	기관명	전신전화가입권 잔액
○사	5,832,760	0000본부	18,513,500
00본부	25,403,480	0000본부	10,396,800
00본부	4,706,800	0000본부	14,626,160
00지역본부	9,058,000	00본부	9,684,598
0000본부	12,078,720	00본부	10,010,400
00지역본부	4,724,000	00본부	8,940,294
00본부	2,134,000	합 계	136,109,512

□□는 지난 2001. 4. 15. 일반전화의 설비비 부담형 가입방식을 폐지하면서 기존 유선전화 가입자가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유선전화를 해지할 경우 전신전화가입권을 환급해주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2009년 9월 일반전화를 인터넷전화로 전환할 것을 각종행정기관에 권고하였고 인터넷전화의 원활한 도입 및 정착을 위하여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도입·운영 지침」을 배포하였으며

일반전화를 해지하고 인터넷전화를 도입할 경우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시내·외 전화 및 국제전화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통신비 절감이 가능하다.

- 9 -

따라서, □□에 청구하여 전신전화가입권 136,109,512원을 회수하면 여유자금 운용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인터넷 전화를 도입할 경우 통신비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신전화가입권 환급 신청 및 인터넷전화 도입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조치할 사항 OO□□실장은 전신전화가입권 136,109,512원 의 반환을 □□에 청구하고 인터넷전화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